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목적

-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참여신청일 이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신규 고용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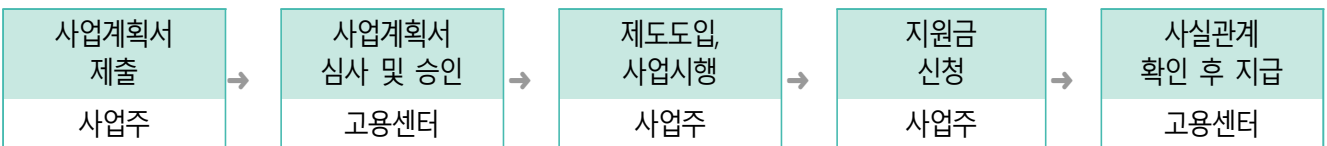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상향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신청)



출산 · 육아 지원

■ 사업목적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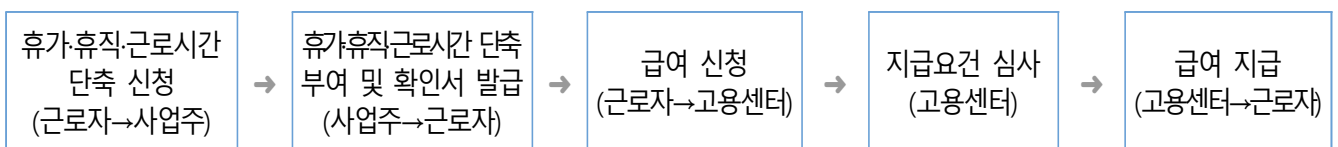
육아휴직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 휴직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2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허용예외사유>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주당 최초 5시간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목적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특례* 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신청)

